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금오테니스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테니스 인구 저변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재산현황

- 건물명 :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 위치 : 구미시 산책길 105(남통동 136-1번지 일원)
- 규모 : 부지 24,966㎡, 건축면적 4,865.61㎡
건축연면적 4,997.74㎡(지하1층, 지상2층)
- 사업비 : 12,500백만원(도비 720, 시비 11,280, 특별교부세 500)
- 주요시설 : 테니스장 15면(실내 4면, 실외 11면) 및 부대시설

3. 운영전출금 : 연 497백만원

○ 운영전출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공공요금	용역비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비고
497	340	68	51	25	13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시설 현황

I 일반현황

- 위 치 : 구미시 산책길 105(남통동 136-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4,966㎡, 건축면적 4,865.61㎡
건축연면적 4,997.74㎡(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12,500백만원(도비 720, 시비 11,280, 특별교부세 500)
- 주요시설 : 테니스장 15면(실내 4면, 실외 11면) 및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물 내 역	비 고
동 별	층 별(m²)			
실내코트	지하 1층	58.74	기계실, 펌프실	
	1층	3,767.92	실내코트 4면, 샤워실, 선수대기실, 심판실, 관리실, 접빈실, 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2층	767.10	관람석(478석), 방송실	
센터코트	1층	215.79	실외코트 1면, 선수대기실, 화장실	
	2층	54	관람석(1,251석), 운영실	
휴게실	1층	134.19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기계실	
기타시설			주차장(138대), 전광판, 체력단련시설(6종) 태양광설비(25kw), 조명시설, 조정시설 등	

□ 시설 평면도



II

운영현황

- ☐ 운영시간 : 06:00 ~ 22:00
- ☐ 휴장일시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 운영인력 : 3명
- ☐ 이용요금

○ 일일회원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사용일	사용코트	주간	조기·야간	
실 외	평일	1인/1면/2시간	2,000원	3,000원	조기·야간 사용은 조명사용료를 포함
	토,일공휴일		2,500원	3,500원	
실 내	평일	1면/2시간	24,000원	24,000원	
	토,일공휴일		30,000원	30,000원	

○ 월회원 사용료

- 개인사용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사용일	사용코트	주간	조기·야간	전체사용	
실 외	월~토	1인/1면/2시간	20,000원	30,000원	50,000원	

- 단체사용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코트	회원수	사용일	사용코트	주간	조기·야간	전체사용	
실 외	10명 미만	월~토	1면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10명 이상~20명 미만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20명 이상~30명 미만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30명 이상~40명 미만			250,000원	350,000원	600,000원	
	40명 이상			300,000원	400,000원	700,000원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위탁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 및 생활체육관련단체, 법인 및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